

삼계탕 일본 수입자 라벨 표기 방법

조사회신일 : 2016.11.17

품목 : 삼계탕

I. 상품개요

- 상품명
- 삼계탕
- 상품 형태
- 레토르트 삼계탕

II. 수입자 라벨 표시안

1. 수입자 표기 예시

● 이 상품은 레토르트 식품입니다.

○ 몇 인분

명칭	삼계탕
원재료명	닭고기, 찹쌀, 들깨분말, 고려인삼, 믹스분말(전분, 덱스트린, 설탕) * 정보 보호상 일부 성분은 생략함
첨가물	조미료(아미노산 등), 아라닌
살균방법	기밀성 용기에 밀봉하여 가압·가열 살균
내용량	700g
상미기간	표지 상단부에 기재
보존방법	상온에서 보관하십시오.
원산국명	한 국
수입자	○○○

조리방법 :

【냄비로 조리하는 경우】

· 개봉하여 삼계탕을 냄비에 옮긴후, 중불에서 4-5 분간 데워 드십시오.

【뜨거운 물로 데우는 경우】

· 개봉하지 않은 채로 뜨거운물에 넣어 7 분간 데운후 드십시오.

【전자레인지 사용시(700W 기준)】

·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내용물을 옮겨담아 랍을 씌운뒤 5 분 정도 데워 드십시오.

2. 영양성분 표시

영양성분표시 (100g 당)			
에너지	130 kcal	탄수화물	8 g
단백질	10 g	식염상당량	0.3 mg
지질	7 g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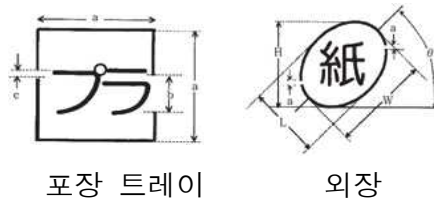
3. 일괄표시와 영양성분표시 기재에 대한 참고사항

- 원재료명의 믹스분말에 대하여
 - 타피오카전분과 타피오카전분에 포함되는 덱스트린, 설탕, 전분을 합쳐 믹스분말로 표기, 타피오카분말과 전분을 합쳐 전분으로 기재했습니다.
- 첨가물의 조미료에 대하여
 - L-글루타민산나트륨과 글루신을 합성한 배합율보다 Disodium 5'-Ribonucleotide의 배합율이 많은 경우에는 조미료(핵산 등)으로 기재합니다.
- 영양성분표의 식염상당량에 대하여
 - 구기준의 나트륨 표기가 아닌 식염상당량으로의 표기가 필요합니다.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$$\text{나트륨} 130(\text{mg}) \times 2.54 / 1000 = 0.3302(\text{g})$$

4. 문자 크기 및 재활용 마크

- 일괄 표시 및 영양 표시의 글자 크기가 8 포인트 이상임을 확인하십시오.
(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이하인 경우에는 5.5포인트 이상 활자 기재.)
- 플라스틱 마크의 한변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m 이상입니다.
- 문자크기는 JIS Z8305규격 (1포인트=0.3514mm)에 따르십시오.



포장 트레이

외장

III. 기타사항

1. 참고 표기 사항

- 표시에 대하여 명확히 의무화 되어있는것은 아니으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. 글자 크기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는 않으나, 사용자가 보기쉬운 크기로 표시하도록 해주십시오.
- 표시예
본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소고기, 새우, 너트류, 대두 등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.

2. 표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

- 식품표기 기준에서의 금지표시
 - 상품표시는 실제 상품보다도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일부 식품은 **식품 표시기준** 및 **공정 경쟁 규약** 등에 의거하여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.
- 금지표시 예시
 - 실제 상품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게끔 오인할만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.
 -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 - 유아용 규격적용식품 이외의 식품은 유아용 규격적용식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혼란을 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분별생산유통관리가 확인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 이외의 식품은, 비유전자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조직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속하는 작물 이외의 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해당 농산물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나트륨소금을 첨가한 식품은 나트륨량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 - 기능성 표지식품이외의 식품은 영양기능성식품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표시가 있습니다.
 - 보건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은 보건기능식품과 혼동되는 명칭, 영양성분의 기능 및 특정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의도의 용어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시각장애인이 우유임을 알기 쉽게 하기위해 지붕형 종이팩 용기의 상단의 일부를 파내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 - 일본농림규격의 등급심사를 통과한 식품이외의 식품은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

을 금지합니다.

- 그 외의 내용물을 오인시키는 문자, 그림, 사진 등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
3. 관계법

식품표시기준

(http://www.caa.go.jp/foods/pdf/150320_kijyun.pdf)